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	
번호	27

제출년월일 : 1995. 9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정책보좌관의 정원과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이 내무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
- 관련 정원의 증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골자

- 정책보좌관 정원 : 본청에 11명을 한시로 증원
 - 지방행정 2급 1명 (97. 6. 30)
 - 지방행정 3급 3명 (96. 12. 31 - 1명, 97. 6. 30 - 2명)
 - 지방행정 4급 2명 (96. 12. 31)
 - 지방시설 4급 4명 (96. 6. 30 - 1명, 96. 12. 31 - 3명)
 - 지방수의 4급 1명 (96. 12. 31)
-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 : 15명 증원
 - 본 청 : 9명 (7급 7명, 8급 2명)
 - 사업소(자연학습원) : 6명 (6급 1명, 7급 2명, 8급 3명)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제5호, 제19조제1항, 제21조제1항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본청 “898명” 을 “918명” 으로, 사업소 “369” 를 “375” 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본청의 정책보좌관 정원 11명은 1995년 8월 24일부터, 기타 정원은 1995년 8월 30일부터 각각 적용한다.
- ②(한시 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책보좌관 정원 중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, 7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, 3명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되, 그 기한 이내에 해당 정책보좌관이 퇴직(명예퇴직, 공로연수 발령 포함) 한 때에는 퇴직한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.